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매뉴얼

+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1. 소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은 기관 내부의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고발 플랫폼입니다.

2. 내부고발 익명신고자의 요건

-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 · 법인 ·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 · 법인 · 단체 등과 협약 · 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 · 법인 ·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 · 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부고발로 인하여 해당 기관 · 법인 ·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3. 신고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조제1호에 ‘고위공직자’ 범위에 대해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고위공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검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경우, 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 업무 수행

+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4. 신고 유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고위공직자범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아래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합니다.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합니다. (공수처법 제2조제2호)

①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불법제포, 불법감금 (형법 제124조)	폭행, 가혹행위 (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 (형법 제126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형법 제127조)	선거방해 (형법 제128조)	수뢰, 사전수뢰 (형법 제129조)
제삼자뇌물제공 (형법 제130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형법 제131조)	알선수뢰 (형법 제132조)	뇌물공여등 (형법 제133조)

②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형법 제141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형법 제225조)	허위공문서작성등 (형법 제227조)
공전자기록위조·변조 (형법 제227조의2)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형법 제229조)	횡령, 배임 (형법 제355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6조)	배임수증재 (형법 제357조)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의 미수 (형법 제359조)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죄

④ 「변호사법」 제111조(벌칙)의 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음,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

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죄

⑥ 「국가정보원법」 제21조(정치 관여죄) 및 제22조(직권남용죄)의 죄

⑦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 등의 죄)의 죄

⑧ ①부터 ⑦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및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의 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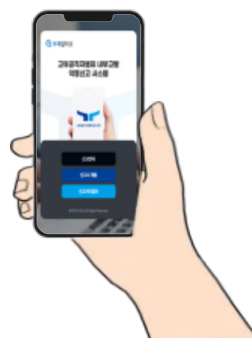
참고자료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 민원안내 > 공수처 수사범위

+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1. 신고서 접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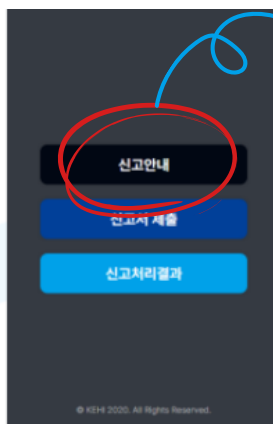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신고 안내

부패알리오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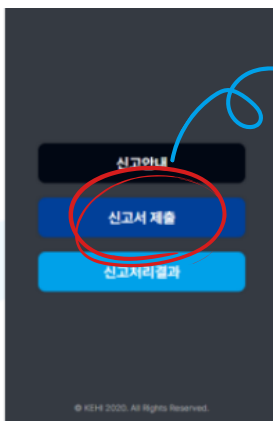


'신고안내'에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자의
요건, 고위공직자 수사범위, 신고처리
절차, 피드백-진행 알림 절차에 관한
안내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신고서 작성

부패알리오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 시스템



'신고서 제출'에서 신고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4. 신고시스템 이용 전 주의사항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작성 페이지 전에 **신고시스템**
이용 전 주의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신고를 진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5. 신고내용 작성

1단계 고위공직자 범죄 종류 선택

고위공직자 범죄 종류 선택 피신고인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는 무엇인가요? *법조항

- 공무원의 부담한 직무수행에 관한 법칙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책임하지 않은 직무수행을 하던 공무원
+법조항
- 공무원의 뇌물수수 관련 법칙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경우
+법조항
- 공문서 또는 공전자기록위조, 변조 등에 관한 법칙
공문서 또는 공전자기록의 위, 변조 및 행사, 공문서류 등의 효력을 해하거나 공문물을 파괴하는 경우
+법조항
- 공무원의 직무상 횡령, 배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법조항
- 공무원의 알선, 청탁 관련 법칙
공무원이 알선,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경우
+법조항
- 정치자금 부정수수 관련 법칙
공무원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경우
+법조항
- 기타
1. 국가정보법 제21조(정치권애치) 및 제22조(직권남용)의 죄
+더보기

신고할 범죄 종류
다중 선택 가능!

2단계 피신고인의 직위 선택

피신고인의 직위 선택 피신고인의 직(職)은 어떻게 됩니까?

① 대통령	②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③ 내각총리 및 내각장관	④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장무직공무원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장무직공무원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제2호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무직공무원	⑧ 대통령비서실, 국가안전처,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⑨ 국회의원, 국회의장, 국회의장비서실, 국회의원비서실의 장무직공무원	⑩ 헌법연구처위원, 사법연구관, 연구위원, 법원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장무직공무원
⑪ 정무장관	⑫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⑬ 현직 및 예비	⑭ 장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⑮ 장정급 장교	⑯ 경찰감독관, 부원장, 감사
⑰ 감사관, 국세관, 공청가계위원회, 공청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⑱ 기타

피신고인의 직위 선택

+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5. 신고내용 작성

3단계 신고서 내용 작성

신고서 작성

제목 *

피신고인의 이름 *
 ❶ 피신고인이 다수일 경우 모두 적어주시요.

고위공직자 범죄 내용 *
 ❶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 - 귀하께서 최대한 피신고인의 고위공직자범죄.

증빙자료
 ❶ 파일크기제한 : 50MB
 ❶ 귀하가 신고한 고위공직자범죄 사실을 입증할 4
 ❶ 파일 확장명은 zip, jpg, png, mp3, mp4, hw

신고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검토 및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4단계 비밀번호 입력 및 답변알림 선택

비밀번호 *  신고 후속 보고 및 처리결과 확인을 위한 비밀번호 입력(기억 필수!)

❶ 비밀번호 분실 시 후속 보고 및 처리결과 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❶ 신고서 제출 후에는 **6자리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고유번호는 재발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❶ 신고의 진행상태나 결과는 약 10일 이후 '신고처리 결과'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알림 * ☒ 예 ☐ 아니오  답변 알림 [예] 선택 시 SMS로 알림 수신 가능
 (입력하신 휴대번호는 시스템 내에서 050안심번호로 자동전환되며, 공수처 직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❶ 귀하가 제공한 휴대번호는 안심번호로 저장되며 공수처 직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❶ 귀하의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 신고사건의 진행상황 등을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❶ 공수처 직원이 귀하의 사건을 확인하고자 문자 등으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스팸방지입력 *
 7f120

5단계 신고서 제출

부패알리오

신고서 접수가 완료 되었습니다.
 고유번호는 5012345 입니다.
 비번은 11111 입니다.

고유번호는 재발급이 불가하니 반드시 메모 또는
 이미지 캡처하여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 처리 과정 및 결과 확인을 위해
고유번호와 비밀번호 pdf로 저장
혹은 메모 필수 !

+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1. 신고 결과 확인

(1) '신고처리 결과' 클릭



(2) 신고서 제출 시 발급받은 고유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 아래에서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으세요.

(3) 신고 내용 및 피드백 확인

내역확인		피드백
제목		
등록일		
기관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고번호		
처리상태	접수중	

내역확인
피드백

①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1 N [기관 담당자의 답변] 제목

사건 증거 자료 보완 요청

첨부파일:



신고센터직원과 익명으로 소통 가능!

+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1. 익명성 보장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은 신고자의 IP접속기록 등 식별 가능한 로그를 일절 저장하지 않으며, 신고가 제출되는 즉시 모든 신고 내용은 암호화되어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신고서에 직접 인적사항을 기재하거나 신고 사실을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는 한, 내부고발센터 직원은 물론 누구도 신고자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2. 피드백 절차

(1)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경우

신고서 제출 시 입력한 휴대폰번호는 시스템에서 '안심번호(050)'으로 자동 변환되며, 수사관은 해당 안심번호(050)를 통해 신고 내용 보완 요청, 처리 경과 안내 등 필요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심번호를 통한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보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안심번호(050)로 전화를 걸 경우, 수사관이 전화를 수신하게 되면서 원래의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 제출 시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통해 신고 처리 현황과 피드백 알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필요 시 신고 내용 보완 요청 등 피드백 댓글을 등록하므로, 신고자는 정기적으로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료 보완 방법

사건 확인 및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관이 사건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보완 요청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야 하며, **2회 이상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매뉴얼
